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8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7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10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가. 제안이유

-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함.

나. 주요내용

- 직무(안 제2조)
 -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 ▶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위촉(안 제3조)
 - ▶ 고문노무사의 수(1인) 및 위촉기간(1년)에 관한 사항

○ 해촉(안 제4조)

- 고문노무사 해촉에 관한 사항

○ 수당(안 제5조)

- 고문노무사 수당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위촉과 위촉해제 안 제5조에서는 수당 안 제7조에서는 비밀엄수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고문공인노무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부.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
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 또는 위촉해제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제3조제3항 관련)

본인은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노무사 ○ ○ ○ (인)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축 장

(제3조제4항 관련)

공인노무사 ○○○

귀하를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평창군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제3조제4항 관련)

평창군수와 공인노무사 000간에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평창군 또는 하부 행정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사관계 민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평창군수의 위임에 따라 노동관계 민원의 변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2조에 따라 평창군수가 자문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평창군수에게 청구할 때에는 매월별 자문실적(회신일 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수는 고문노무사의 청구에 따라서 자문료 등을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평창군수와 고문노무사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〇 〇 〇 (직인)

평창군 고문노무사 〇 〇 〇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